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전부 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의 세분화 및 그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협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○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규정함

- 체납체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
-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과하게 한 공무원 또한 민간인
-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
○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한도를 정함

- 지급기준

-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

-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
-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-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- 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 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-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의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

- 지급방법 및 부당 지급시 환수
 - 포상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의 포상금은 대상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환수한다는 규정의 신설

3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

4. 검토사항

-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
-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-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
-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당지급 되었을 경우에는 환수한다는 사항이 중요한 내용이며
- 참고로 포상금의 지급은
 -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
 -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
 -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 -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와 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 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조정하였으며

그 한도액은 1건당 30만원으로 하되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로 하고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의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징수액의 100분의 5로 정하고 한도액을 1건당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동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100만원이라고 만 표시되어있어 이를 1건당 100만원으로 수정하고 다른 항목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